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5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75,593,392	20,267,802
일반회계	654,360,616	19,630,818
특별회계	21,232,776	636,983
기타특별회계	21,232,776	636,983
상수도특별회계	4,126,185	123,786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626,261	48,78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55,234	25,657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3,221,502	96,645
주차장특별회계	216,120	6,48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1,320	6,04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856,000	265,680
하수도특별회계	2,130,154	63,90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221,11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기금운용계획서는 별첨 "기금운용계획"과 같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